

大田直轄市決算検査委員選任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



提出年月日 : 1992. 3. 12

提出者 : 大田直轄市長

1. 提案理由

現行 大田直轄市決算検査委員選任 및 運營에 관한 조례 중 内務部의 改正 조례
準則에 의거 檢査委員의 選任方法 및 節次를 改正하고 決算検査期間中 委員의
日費를 上向 調整하여 現實化 하고자함.

2. 主要骨子

가. 委員의 選任方法 및 節次

現行 委員의 選任은 委員 5人中 市議會議員 1人을 除外한 4人の 委員은 市長
이 倍數로 推薦하여 市議會에서 選任하도록 되어있으나, 이를 改正하여 委員
의 選任은 市議會議長이 推薦하여 市議會에서 選任하도록 改正하고 다만, 委
員中 2人은 市長이 推薦한 者로 할 수 있도록함.(案 第2條 및 第3條)

나. 決算検査委員의 日費

決算検査期間中 委員의 日費를 現行 20,000원에서 50,000원으로 上向調整
하여 現實化하고자 함.(案 第13條 別表 2)

3. 參考事項

内務部準則 : 財政 22161-114(92. 2. 20)

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

대전직할시결산검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직할시결산검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위원의 정수) 위원의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. 다만, 위원중 2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.

②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.

③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

④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13조(지급기준)별표 제2호중 일비 액수 “20,000원”을 “5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조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2조(의원의정수)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 임한 1인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한다.</p> | <p>제2조(위원회의정수) 위원의 정수 는 5인이내로 한다.</p> |
| 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지방의 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.</p> | 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 가 선임한다. 다만, 위원 중 2인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 는 자로 할 수 있다.</p> |
|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 위원 정수의 2배수 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 | <p>②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 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 을 받아야 한다.</p> |
| <p>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 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또 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.</p> | <p>③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 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 조의 규정에 의한다.</p> |
| <p>④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</p> |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⑤ (생 략)</p> | |

| 현 행 | | 개 정 안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|-----|-------|---|--|----|-----|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|
| <p><별표 제 2호></p> | | <p><별표 제 2호>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구분</th><th>액 수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일 비</td><td>20,000원</td></tr><tr><td>여 비</td><td>“생 략”</td></tr></tbody></table> | | 구분 | 액 수 | 일 비 | 20,000원 | 여 비 | “생 략” |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구분</th><th>액 수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일 비</td><td>50,000원</td></tr><tr><td>여 비</td><td>“현행과 같음”</td></tr></tbody></table> | | 구분 | 액 수 | 일 비 | 50,000원 | 여 비 | “현행과 같음” |
| 구분 | 액 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일 비 | 20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여 비 | “생 략”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구분 | 액 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일 비 | 50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여 비 | “현행과 같음”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大田直轄市決算検査委員選任 및
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
審查報告書

1992年4月10日

内務委員會

I. 審查經過

가. 提出日字 및 提案者 : 1992年 3月 23日 大田直轄市長

나. 回 附 日 字 : 1992年 3月 24日

다. 上 程 日 字 :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(臨時會)
第2次 内務委員會(1992. 4. 9)
上程, 審議, 議決

II. 提案說明 要旨(提案說明者 : 財務局長)

1. 提案理由

現行 大田直轄市決算検査委員選任 및 運營에 관한 條例中 内務部
의 改正條例準則에 의거 檢査委員의 選任方法 및 節次를 改正하고
決算検査期間中 委員의 日費를 上向 調整하여 現實化하고자 함.

2. 主 要 骨 子

가. 委員의 選任方法 및 節次

現行 委員의 選任은 委員 5人中 市議會議員 1人을 除外한 4人의 委員은 市長이 倍數로 推薦하여 市議會에서 選任하도록 되어있으나, 이를 改正하여 委員의 選任은 市議會議長이 推薦하여 市議會에서 選任하도록 改正하고 다만, 委員中 2人은 市長이 推薦한 者로 할 수 있도록 함.(案 第2條 및 第3條)

나. 決算檢查委員의 日費

決算檢查期間中 委員의 日費를 現行 20,000원에서 50,000원으로 上向調整하여 現實化하고자 함.(案 第13條 別表2)

III. 專門委員 檢討 要旨 (專門委員 : 安鍾贊)

本 條例는 地方自治法 第125條의 規定에 依據 地方自治團體의 豫算執行에 관한 決算檢查를 實施함에 同法 第125條 3項 및 同法施行令 第46條와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算檢查委員의 選任은 地方議會에서 하도록 規定된바,

現行 條例를 調整 改善하여 地方自治團體 會計의 決算檢查에 보다 內實을 기하고자 하는 事項으로서

改正되는 本 案件의 主要內容을 살펴보면

現行 決算検査委員의 選任은 委員5人중 市議會議員 1人을 제외한 4人の 委員은 市長이 배수로 推薦하여 市議會에서

選任토록 되어 있으나 本 檢查委員 5人을 市議會議長이 推薦하여 市議會에서 選任토록 하였고 다만 委員중 2人은

市長이 推薦하는 者로 할 수 있도록 하여 委員選任에 대한 市議會의 權限을 強化토록 하였음.

또한 決算検査期間중 委員의 日費를 現行 2萬원에서 5萬원으로 上向調整하여 委員 選任에 보다 專門性을 確保토록 하였음.

이는 豊算의 審議 및 承認權이 議會에 있고 決算 檢査 委員의 選任權도 議會에 있는 만큼 議長의 檢査委員 推薦은 議會運營의 能率面에서 適切한 方案으로 思料됨.

IV. 質疑 및 答辯 要旨 : 省 略

V. 討論 要旨 : 省 略

VI. 審査 結果 : 原案 可決

VII. 體系 字句 整理 內容 : 罷 음

VIII. 其他 必要한 事項 : 罷 음